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 2026년 기아대책x서울시 후원연계사업 공고문

서울시복지재단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게 돌봄 상황에 맞는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희망친구 기아대책 x 서울시** 후원자원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게 아래와 같이 연계하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년 7월20일(월) ~ 2026년 12월31일(약 5개월간)
-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9세~39세 이하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 ※ 지원대상은 신청기간(2026.7.20.~12.31)을 기준으로 함
 - ※ 서울복지포털 가족돌봄정보 등록 완료자
 - ※ 자녀돌봄, 부부돌봄의 경우 제외

★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체크리스트 ★

- 6가지 조건 모두 해당될 경우,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임

연번	질 문 내 용	확인
1	본인의 나이가 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나요?	☐
2	본인이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나요?	☐
3	돌봄 받는 사람이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
4	돌봄 받는 사람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나요?	☐
5	본인이 가족 돌봄(직접 돌봄 또는 생계 책임)을 행하고 있나요? - 본인이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나요? -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나요?	☐
6	본인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학업 및 진로 또는 생계활동 유지의 어려움, 개인생활의 제한, 문화·여가활동의 제한 등을 겪고 있나요?	☐

* 필요 시 질병명이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되어야 함
 ** 민법상 가족: 부, 모, (외)조부, (외)조모 등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150%)<참고용>★신청접수 마감 후 서울시(자치구) 통해 소득확인 예정★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846,357	138,780	68,641	—
2인	6,298,938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8,554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2,107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5,079	410,439	378,691	432,308

○ 신청기간 : 2026년 7월20일(월) ~ 12월31일(목)(약 5개월간)

구분	신청기간	제출처
신청자	상시	사례관리기관
사례관리기관 담당자	상시	기아대책

★ 신청 유의사항(필독) ★

- 신청자는 해당기간(2026.07.20.~12.31.)에만 사례관리기관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이후 신청서 제출은 불가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 및 준비해야 하며, 사례관리기관에서 대리작성 요청 불가합니다. (협조 가능)

○ 신청방법 : 사례관리기관을 통한 신청(가족돌봄청소년·청년 당사자 직접 신청 불가)

※사례관리기관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관, 학교, 교육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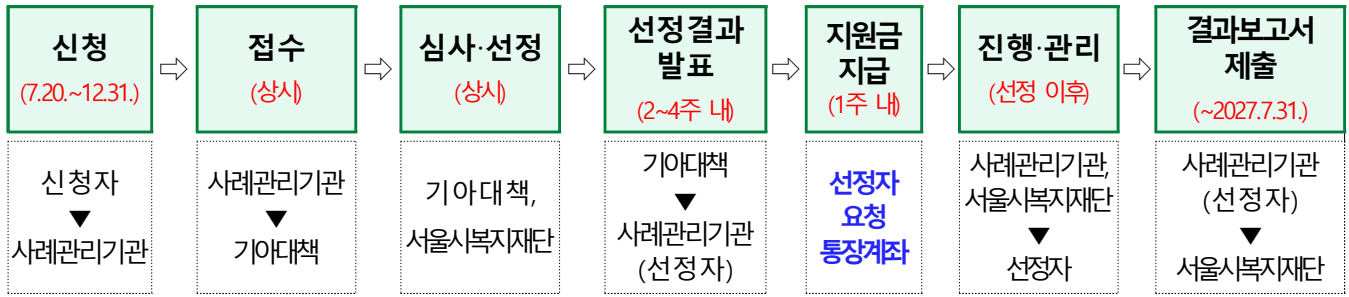
○ 지원내용 : 1가구당 생계·학습·의료·주거·자기돌봄 합산 최대 250만원 이내 현금지원

- ※ 항목별 지원한도 및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하단의 상세 내용 확인 필요
- ※ 2026년 서울시 자기돌봄비 사업 선정자의 경우 후순위 선정
- ※ 2026년 KMI한국의학연구소 의료비·생계비 선정자의 경우, 기 지원금액을 감액 후 지원
- ※ 2023년, 2024년, 2025년 기아대책 선정자의 경우 후순위 선정

지원영역	지원항목 예시	지원대상	지원한도
생계비	▪ 생활비(생필품/식료품/공공요금) 등	가족돌봄청(소년)	최대 100만원
학습비	▪ 기초교과목, 예체능 등 교육비, 학원 수강료 ※단순 취미/여가활동을 위한 교육비 신청불가 ▪ 학습교재 및 교구 구입비 ※학습기기(컴퓨터, 태블릿 등) 구입불가 ▪ 자격증 응시료 및 시험 접수비 ▪ 도서구입 및 독서플랫폼 구독료	가족돌봄청(소년)	최대 100만원
의료비	▪ 기지출한 수술비 ※당해연도(신청 시점 이전까지) 기지출 건에 한해 지출금액 50% 인정 ▪ 수술비·입원비·진료비·간병비 ※돌봄대상자의 현재 질병이나 치료와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해 신청가능 ▪ 보장구구입비(보청기, 보조기, 휠체어 등) ▪ 특수치료비(심리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등)	가족돌봄청(소년) 돌봄대상자	최대 250만원
주거비	▪ 임대보증금 ※자부담한 임대보증금 신청불가 ▪ 월세체납금 ※월세체납금 이외 월세, 보증금에 대한 월이자 신청불가	가족돌봄청(소년)	최대 250만원
자기돌봄비	▪ 문화활동비(연극, 뮤지컬, 공연, 전시회 등) ▪ 여행지원비	가족돌봄청(소년)	최대 50만원
유의사항	* 지원금 신청은 지원금 지급 이후 사용 가능한 금액에 대한 신청 (의료비만 기지출 인정) * 지원 한도 내에서 필요 금액에 근거하여 최대 6개월(지원금 사용 기간: 6개월) 기준 산출하여 신청 * 생계비, 학습비, 의료비, 주거비, 자기돌봄비를 조합하여 최대 250만원까지 신청 가능 ※ 단, 필요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시 본인이 신청한 금액만큼 송금됨. * 선정 여부 및 지원 범위(금액조정) 등은 신청서 내 지원 사유를 기반으로 기아대책(선정심의회)에서 심의 예정 * 타기관 지원을 받는 경우 심사를 통해 기지원 받은 내용을 고려하여 선정 및 금액 조정 가능 * 지원불가 항목 신청 시, 해당 금액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신청금액만 검토		

○ 절차 및 일정

※ 향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접수	가족돌봄청(소)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하여 사례관리기관에 제출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재단소식) 에서 다운로드
	사례관리기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서식1,2) 서명하여 서류일체 기아대책 이메일로 제출 southsupport@kfhi.or.kr ※제출서류: 필수서류(신청서, 목록, 개인정보동의서 등) 및 선택서류(해당자에 한함)
[신청자]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하여 사례관리기관에 제출 [사례관리기관]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서식1,2) 서명하여 기아대책에 제출		
심사·선정	[기아대책] 신청서 및 증빙서류 내부 검토(1차) 및 심사, 대상자 선정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포털 등록 검토(2차)	
	* 재단 및 타기관에서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 심사를 통해 감액 또는 지원 제외 [기아대책] 선정결과 안내 (사례관리기관 통해 안내)	
지원금 지급	[기아대책]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직접 소통 * 신청서 기반 필요금액에 근거하여 최대 6개월 기준 산출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은 선정자와 사례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 계좌로 송금 예정 * 모든 항목 지원금의 사용 내역 기재된 사후 결과보고서 및 영수증, 물품사진 제출 필수	
진행·관리	* 선정자에게 지원금이 송금된 이후 지원금액의 실집행 및 관리는 사례관리기관과 서울시복지재단이 진행	
	* 지원금이 신청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예정	
결과보고서 제출	* 지원 목적에 맞는 지원금 사용 여부 점검, 사업 만족도 조사 등 시행	
	* 지원영역별 해당하는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서울시복지재단)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6년 7월20일 ~ 12월31일(약 5개월간)

구분	신청기간	제출처
신청자	상시	사례관리기관
사례관리기관 담당자	상시	기아대책

○ 신청방법 : 사례관리기관 통한 신청(가족돌봄청소년·청년 당사자 직접 신청 불가)

※사례관리기관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관, 학교, 교육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서울복지포털 미가입자는 아래 링크로 가족돌봄청년 등록 이후 지원 신청

☞ <https://wis.seoul.go.kr/was/fmc/FamilyCareApplyTm.do>

○ 접수방법 : 사례관리기관에서 기아대책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

※이메일 제목 : 기아대책 후원연계사업 이름(나이) <예시> 기아대책 후원연계사업 김돌봄(20)

○ 접 수 처 : southsupport@kfhi.or.kr

○ 유의사항(신청 시 필독) ※ 유의사항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신청·선정		- 2026 KMI한국의학연구소 의료비·생계비 지원사업 선정자의 경우, 기 지원금액 감액 후 지원 - 2023·2024·2025년 기아대책 후원연계사업 선정자의 경우 후순위 선정, 추가 모집은 기아대책 내부 논의 후 결정 - 돌봄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며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우선 지원이나 돌봄가정주거상할 경우 선정상의 통해 지원 가능 - 타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심사를 통해 기지원 받은 내용 고려하여 선정여부 및 금액 조정 가능 - 의료비의 경우 공적 자원(의료급여분, 건강보험공단지원분, 공공바우처지원분, 기타상해보험 등) 우선 활용 및 자부담 계획 고려 - 주거비의 경우 자부담 가능 금액(현 주거비 보증금 등) 제외 후 부족분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계약 체결이 완료된 경우 선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에 한하여 신청 - 금융재산 증가로 다른 국가서비스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음 (ex. 국민기초생활수급비 감액 등) -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감액, 중단,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지원금 제재 및 반납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아대책에 지원을 요청한 것을 확인한 경우 (예: 타기관에서 동일한 항목으로 지원받은 것에 대해 중복으로 기아대책 후원금을 신청한 경우 등)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아대책에 지원을 과하게 요청한 것을 확인 한 경우 (예: 실제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여 부당 청구한 경우, 지원 산출근거 서류에 중대한 허위가 있는 경우 등)
	목적외사용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등의 지원 사유와는 다르게 기아대책 지원금을 사용한 행위 (예: 지원금을 타인이 사용한 경우, 지원 사유와 다르게 사용된 경우 등)
	사용기간 외 집행	정해진 사용 기간 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 사용은 지원금 지급일 이후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사용가능함(기지출 수술비 제외)
	적격증빙 미제출	각 영역별 요청한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적격한 증빙자료가 아닌 경우(예: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없이 거래명세서만 제출한 경우, 사용기간 이외 사용한 경우 등)
	아동보호 정책 위반	기아대책 지원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기아대책 지원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조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현재 아동이 처한 상황에서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을 때 지원금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제한		- 지원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돌봄대상자 사망 시(사망일 기점으로 남은 지원금 반납) - 기타 사정(보호자 구속, 수감 등)으로 지원금 지급 및 사용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등

○ 제출서류

★ 필수서류(공통)

연번	작성자	제출서류
1	신청자	신청서 및 제출자료 목록확인서 <붙임_서식1,2>
	사례관리기관	신청서 (7. 종합 내용) 및 제출자료 목록확인서 서명 <붙임_서식1,2>
2	신청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자필서명필수) <붙임_서식3>
	돌봄대상자	행정공동정보이용 사전 동의서(자필서명필수)
3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기준 1주일 이내 발급본)	
	-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본인 기준 1부 - 돌봄대상자의 등본상 주소지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다를 경우, 돌봄대상자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자 주민등록번호(13자리)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신청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돌봄대상자가 [조부, 조모, 형제·자매]일 때, 가족관계증명서는 “부” 기준으로 발급 - 돌봄대상자가 [외조부, 외조모, 형제·자매]일 때, 가족관계증명서는 “모” 기준으로 발급 - 돌봄대상자가 [부, 모]일 때,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기준으로 발급	
5	돌봄대상자의 장애 또는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증빙서류 : 신청기간 기준 6개월 내 발급본	
	- 장애인증명서, 질병명이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의 경우, 질병코드와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되어야 함	
6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명의 통장사본	
	-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명의 통장사본	
	* 반드시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만 가능(본인 외 가족 명의 통장사본 불가)	

★ 추가 서류(해당자)

지원영역	구분	추가 서류
돌봄대상자가 서울시 외 타시도에 거주할 경우		1. 돌봄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전월1개월) ※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는 경우, 소득 확인할 수 있는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류로 제출
의료비 신청한 경우	수술비(지출 예정) 입원비, 진료비, 간병비, 특수치료비	1..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 필수서류로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할 경우, 중복제출 하지 않아도 됨 ※ 단 진단서 및 소견서 상 수술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치료비 추정서<붙임_서식4>
	수술비(기지출) ※당해연도(신청 시점 이전까지)	1. 수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등) 2. 수술비 영수증 당해연도(신청 시점 이전까지)
	보장구구입비(기지출 지출예정)	1. 보장구 처방전 2. 견적서
	돌봄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돌봄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주거비 신청한 경우	1. (공통) 본인 상황에 맞는 주거지 확인서류 1부 - 임대주택(LH, SH), 일반 전월세 등은 임대차계약서 - 자가는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 및 토지대장 - 시설거주는 시설입소 확인서 - 무료임대 등의 경우는 무료임대확인서<붙임_서식5> 또는 거주사실확인서<붙임_서식6>	
	일반 전·월세 임차보증금	2. 임대차 계약서(이사에정지)
	주거복지사업대상자(LH·SH 등) 보증금의 본인부담금	3. 주거복지 대상 증명 및 신청서류 4. 기타 선정안내증빙서류
	월세체납금	5. 월세체납 기간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문의사항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센터 가족돌봄청년지원팀
☎ 02-6353-0338(신청기간에는 문의 전화가 많아 통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채널_서울시가족돌봄청년지원 WAY http://pf.kakao.com/_JVWWG/chat
- 기아대책 복지사업팀
☎ 02-2085-8210
-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2-2133-7315

서울시복지재단